

|  |                    |                            |    |                                   |
|--|--------------------|----------------------------|----|-----------------------------------|
| <br>금융위원회 | <b>보 도 참 고 자 료</b> |                            |    | • 생산적 금융<br>• 신뢰받는 금융<br>• 포용적 금융 |
|  | <b>보도</b>          | <b>2018.9.19.(수) 10:00</b> | 배포 | 2018.9.18.(화)                     |

|              |                              |       |                                |
|--------------|------------------------------|-------|--------------------------------|
| 금융위원회<br>책임자 | 은행과장 전 요 섭<br>(02-2100-2950) | 금융연구원 | 이 병 윤 선임연구위원<br>(02-3705-6343) |
| 담당자          | 사무관 김 영 대<br>(02-2100-2730)  |       |                                |

## 제 목 :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 '18.9.19(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
- 동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관련 현황 및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동 토론회는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금융회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 김현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음
- 정부는 금일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 토론회 개요  
 - 주제발표 자료 요약

|  |   |                                     |   |
|--|---|-------------------------------------|---|
| <br>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br>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br><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 <b>금융위원회 대 변 인</b><br>pfsc@korea.kr | <br>넓게 들었습니다<br>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10:00 ~ 11:30 □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주최 :  금융위원회  kif 한국금융연구원

## \* 초청의 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추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7년부터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각 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관련 현황 및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귀중한 지혜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손 상 호

## \* 프로그램

|             |  |
|-------------|--|
| 09:40~10:00 | 등 록  |
| 10:00~10:05 | 개회사 김동환 부원장 (한국금융연구원)  |
| 10:05~10:30 | 주제발표 :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br>• 발표 :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
| 10:30~11:30 | 종합토론 (가나다 순)<br>• 사회 : 김현수 교수 (순천향대학교)<br>• 토론 : 김생빈 부장 (저축은행중앙회)<br>박창균 교수 (중앙대학교)<br>양준호 교수 (인천대학교)<br>이경률 부장 (KB국민은행)<br>전요섭 은행과장 (금융위원회) |

**참가신청**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9월 18일(화)까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www.kif.re.kr)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705-6373)

##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1. 서론

-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금융 활성화 검토 필요
- 현재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 정부는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 세계 주요국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1977년부터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

-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가 50% 이상이고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하나 지방금융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금취급기관 총여신의 지방 비중은 39.7%
  - 지방의 금융연관비율이 서울의 1/3, 수도권 1/2 정도에 그침.
  - 지방의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서울의 1/3, 수도권 1/2 정도임.
  
- 우리나라는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아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이나 2016년말 현재 인구는 전체의 49.2%가 집중
  - 실물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도 매우 높음.
    - \* 2016년말 현재 지역내 총생산의 49.6%, 총사업체 수의 47.3%, 종사자 수의 51.2%가 수도권에 집중
  - 금융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높음.
    - \* 2017년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 어음 교환액의 88.9%가 수도권에 집중
  
- 기업금융 수요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공급을 추정해 보았을 때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금융 수요의 대리변수로 지역내 총생산(GRDP),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수, 중소기업매출액 등을 사용
  - 기업금융 수요 대비 예금취급기관 여신 공급 비중이 서울 > 수도권 > 지방의 순으로 추정됨.
  
- 지방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예금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보다 수도권에 인구 10만명당 점포수가 더 많음.

### 3.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미국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
  - 대상기관 :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증을 받는 금융기관
    - \*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 평가기관 : 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 평가방식 : 각 금융회사의 해당 지역에서의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등급 부여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공시, 각종 인허가 심사 시 CRA 관련 실적 고려,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도 제공
  
-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할 필요
  - 지역별 대출에 대한 일률적 의무비율 부과는 1) 자금배분 효율성 악화, 2) 금융기관 건전성 저해, 2) 적정 의무비율 산정 불가능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여 정성평가 방안 검토
  - 평가대상 :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검토
  - 평가주체 : 금융위가 제도를 운영하되 금감원, 지역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지표 : 지방의 지역 내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노력,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지표 산정 시 지역 내 금융수요, 전국 금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상이한 역할 및 고객군, 지역내에서의 상호 보완 및 경쟁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
  - 평가 결과 활용 : 연차보고서 등에 결과를 공시하고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